

구제역 재발방지 종합대책 발표

- 방역부터 검역까지 13개 신규대응 방안 마련·추진 -

<주요 내용>

①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국 인증 획득 주요 대책

- 구제역 위험농가별 카드관리제 도입(257농가, 1,436두)
- 농가편의향상, 백신공급개선: 대포장(25두) → 대포장(25두)·소포장(10두)
 - ※ 금년 3,400만두분 중 소포장 370만두분 희망농가 공급
 - ※ 전량수입 → 원료수입 후 국내포장생산('17년부터 원료생산까지 국산화)
-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OIE 인증획득 추진('13.8신청 → '14.5획득)

②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친환경 축산업 기반 마련

- 축종·시설별 맞춤형 차단방역 매뉴얼 27종 개발·보급('13~'14)
 - ※ 축종별 21종(한우, 육우, 젓소, 돼지 등), 시설별 6종(부화장, 도축장, 사료공장 등)
-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추진(종축장 1~5등급, 일반농가 1~4등급)
 - ※('13) 시범사업·평가 → ('14~) 종축장 및 기업농가(9,700예상)부터 단계적 적용
-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('13.8)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동필)는 최근 주변국에서 구제역(4.25)이 발생하고,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·발표하였다.
- 이번 대책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·도 방역 관계관 회의(4.23), 학계 전문가·소비자·생산자단체가 참석한 가축방역협의회(4.25)를 통해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을 통해 마련되었다.
- 또한 상시 방역·국경 검역을 통한 '사전예방'에 초점을 두고, 유사시 강력한 '초등대응'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.
- 구제역 경우는 100% 백신접종, 위험농가 밀착관리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여 '14년 5월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○ 구제역 재발방지의 핵심은 백신접종인 만큼 “중양기동점검반”을 중심으로 매주 집중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, 농가의 백신접종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‘소포장 구제역 백신’을 개발·공급하기로 하였다.

※ 현행 대포장 25두분은 소규모 농가(예: 10~20두 사육)에서는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소포장 백신(10두) 개발

※ 금년 3,400만두분 중 소포장 370만두분은 희망농가에 공급하고, 현재 전량수입을 원료수입후 국내 포장생산으로 개선 ('17년부터 원료생산까지 국산화)

○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'10~'11년 당시 구제역에 노출된 경험이 있었던 위험농가 257농가, 1,436두에 대해 조기도태를 지속 유도하고 ‘농가별 기록관리 카드제’를 실시하여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

※ 위험농가별로 기록관리 카드를 제작하여 검사결과 등을 특별관리

※ 현실적으로 조기도태가 어려운 젖소는 평생이동통제관리(이력관리)

○ 현재 3천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의 방역교육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하고, 유사시를 대비한 구제역 가상방역훈련(CPX)을 실시하기로 하였다.

※ 축산농가 외국인 근로자 3,165명 사후관리 정기점검 (반기별 1회)

※ 구제역 현장 및 도상 가상방역훈련 실시 (5.15일 경기 안성)

■ 끝으로 농식품부는 AI·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은 그 특성상 정부의 노력과 함께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노력과 국민들의 협조가 긴밀히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○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민간방역을 활성화하고,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.

※ 축종과 규모에 따른 27종의 농가 차단방역 표준매뉴얼 개발·보급

(축종별 21종(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 등), 시설별 6종(부화장, 도축장, 사료공장등))

※ 농가 방역일지 표준화 및 우수방역사례 경진대회·포상

○ 또한, 근본적으로 질병에 강한 청정 축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금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의사처방제 등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.

① 농장 질병관리 등급제 (종축장 1~5등급, 일반농가 1~4등급)

※ ('13) 시범사업 → ('14~) 종축장 및 기업농(9,694 추정)부터 단계적 적용

②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('13.8)

구제역 재발방지 종합대책

1 구제역 재발방지 및 청정국 지위 획득

〈 단계별 구제역 청정국 획득·유지 전략추진 〉

① 재발방지 → ② 청정국 지위획득 → ③ 청정국 유지



주요 추진 방향

- ① 백신접종 100% 실시로 재발방지 청정국 여건 확립
 - 최소한 2년이상 비발생, 80%이상 면역방어력 확보
- ② 구제역 위험농가 밀착관리로 청정화 기반 구축
 - 위험농가의 조기도태·검사관리로 구제역 전파위해요인 차단
- ③ 구제역 유입방지 및 유사시 신속 대응 체계 구비
 - 축산관계자 등 국검검역 및 가상방역훈련(CPX) 지속실시
- ④ 14년까지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
 - 청정국 요건에 맞는 방역정책 추진 및 전담팀 운영

가 | 100% 백신접종 추진

- ◇ 구제역 재발방지의 핵심은 100% 백신접종 추진
- ◇ 최소 2년 이상 구제역 비발생, 80% 이상 방어면역력 확보 및 국제기준에 적합한 백신 사용 (OIE 청정화 요건)
- (백신접종) 방역의식 약화로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 축산농가 없을 때까지 지속 점검, 관리 체계 및 교육·홍보강화
 - 소규모 농가는 노인, 부녀자 등으로 백신접종이 쉽지 않아 기피현상, 고령 소규모 소(牛) 농가 접종시술비 지원 등을 통한 100%접종 추진
 - 분기별로 백신공급량, 항체양성율을 종합 분석하여 백신접종 실적 하위 시?군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집중점검 실시
 - ※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지자체는 종합평가에 반영

- 농림축산검역본부·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이하 검역본부·방역지원본부) 중앙기동점검반(9개반 19명) 중심으로 백신접종 집중점검
 - ※백신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: (1차) 50만원 → (2차) 200만원 → (3차) 500만원
- 백신담당 실명제 공무원(22천명)을 통한 지속적으로 농가별 접종실태·점검·지도 (월1회 이상 농장방문, 주1회 이상 전화·문자발송)
 - ※백신담당 실명제 공무원 운영실태 조사 (반기별 1회 실시)

■ (백신공급) 농가에 대한 공급량은 충분히 확보하고, 그간 소량 포장 백신 요구에 맞는 대책 마련·추진

- '13년 3,400만두분 계약물량 확보로 백신 수급의 차질 방지
 - * 백신공급 : ('11) 1,267만두 → ('12) 3,200 → ('13) 3,400
- 그간 소규모 농가의 개선요구에 따라 현행 25두분 포장백신과 함께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“10두분 소량 포장” 백신 공급
 - ※10두분 소량포장 백신 공급량 : 370만두분 ('13년)

■ (방어력) OIE 기준인 방어면역력 80%를 고려한 항체양성을 목표 관리 및 전국적 예찰 지속 추진

- 달성목표 : 백신접종이 충분히 될 경우 80% 이상이 가능하므로 전국 평균 80% 이상 항체양성을 확인검사 실시
- 확인검사 : 전국 구제역 항체(SP)검사 ('13년 86천건)
 - ※검사결과 : ('12) 소98.5%, 번식돈80% → ('13.1~2) 소96.8, 번식돈81.9
 - ※조사대상 : (당초) 소·염소·돼지 → (개선) 소·염소·번식돈 ('12.4월)

OIE 방어면역력 구비조건 : 예방접종 축종의 80% 이상에서 방어면역 구비(방어면역 수준은 감수성 축종의 규모, 축종별 구성 및 밀집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)

■ (연구개발) 백신 검정체계 개선, 백신 연구개발 및 자체생산을 위한 백신연구 센터 설립 추진

- 안전성·유효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검정 실시
 - ※(중전) 수입서류 확인 → (개선) 수입서류확인 및 동물성 시험
- 중장기적으로 백신 연구개발 등을 통한 자체 생산 기반 구축
 - 1단계: 항원 수입후 완제품 국내제조 및 백신연구센터 설립('13~'16)

※('13) 백신 원재료 수입후 국내 동물약품 업체에서 포장생산

- 2단계: 항원 자체개발 후 국내 백신생산('17년 이후)

- (교육홍보) 구제역 방역·신고요령, 농가 백신접종 독려 및 올바른 백신접종법 교육·홍보 지속 추진
 - 지속적인 농가 홍보·교육으로 백신 접종율 제고 등 추진
 -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홍보로 잘못 사용으로 인한 화농 발생 등 최소화 (필요시 백신접종 방법 관련 연구사업 추진)

나 | 위험농가 밀착관리

- ◇ 위험농가* 검사·관리로 구제역 전파 위해요인 차단
 - *위험농가 : NSP항체가 검출된 가축이 있는 농가
 - ◇ 1년 이상 위험농가의 양성축 검사·관리로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 (OIE 청정화 요건)
- (검사체계) 과거 구제역 매몰농장, 종돈장 등 위험군 목적예찰 및 무작위 통계학적 예찰을 통한 NSP항체 양성축 색출
 - 검사대상 : 소·돼지·염소·사슴·야생동물(멧돼지,노루,고라니)
 - 검사계획 : 무작위 32,256두, 목적 48,886두
- (관리현황) NSP항체가 검출된 위험농가(693호, 4,587두) 특별관리 및 1년간 지속검사로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
 - 위험농가의 양성축 이동제한·조기도태, 인접·연관 농가 검사
 - 1차 검사 이후 2차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순환부재 증명 추진
 - ※검사결과, 위험농가에서 NSP 양성축 증가없고, 병원체 소실(항원검사 음성)
 - 현재 조기도태 추진하여 257농가, 1,436두 남음 (대부분 젖소)
 - ※도태보상금 : (젖소) 200~500천원/두, (한우) 200~400, (돼지) 150
- (개선방향) “농가별 기록 관리카드제”를 도입하고, 축종별 특성에 맞게 조기도태·평생관리 추진

- 농장관리 : (현행) 농가별 기록없음 → (개선) 농장별 기록관리
 - 양성축 : (현행) 조기 도태 → (개선) 현실적으로 조기도태가 어려운 젖소는 평생이동관리, 기타 축종은 조기 도태
 - 음성축 : (현행) 양성축에서 2차검사로 음성축이 된 가축의 해제방안 없음 → (개선) 음성축 최종 검사후 해제*
- * 음성축 해제: 이력관리되는 소에 한하며, 돼지 등은 제외

다 | 유입방지 및 신속대응 체계정착

- ◇ 특별방역기간 중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
 - ◇ 신속한 신고·대응·사후관리 체계 완비 (OIE 청정화 요건)
- (유입방지) 구제역 등 사회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에 대한 출입국 축산관계자, 축산물 검역 대응체계 지속 운용
 -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(국경검역관리시스템), 미신고자 지자체통보·확인(매주), 홍보캠페인, 공항만 실태 조사(반기 1회) 등 상시관리
 -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추진
 - ※ 점검사항 : 고용신고, 예방교육, 소독실시, 기록관리 (반기별 1회)
 - (신고체계) 농가 인식도 제고, 정기 전화예찰 및 신고전화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신속한 신고 대응체계 구축
 - 구제역 의심증상 농가 교육·홍보 및 전화예찰(월2회) 지속 실시
 - 신고전화 1588-9060(중앙), 1588-4060(지자체) 불시 점검 (분기 1회)
 - (초동대응) 구제역 위험시기(10월~5월)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 대비
 -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가상방역훈련(CPX) 실시 : 반기별 1회
 - ※ '13.5.15 구제역 CPX 실시(안행부 합동), 지자체 CPX 합동평가(연말)
 - 특별방역기간 중 '방역대책 상황실' 운영(24시간 비상연락체계 가동)
 - 사전 지자체 기동방역기구 편성(13천명), 거점소독시설 위치선정 점검

- (매몰지) 집중호우 시기 등에 매몰지 훼손·침출수 유출 대비 사전예방 일상관리 및 주기적 합동점검
 - 지자체에서 일상관리, 해빙기·집중호우시 중앙합동점검 실시
 - 문제 발생시 “합동기동대응반(농식품부, 환경부 등)”과견, 개선조치

2 상시방역 체질화 및 선진 방역제도 조기 정착

가 | 농가·지자체 상시방역 체질화

- ◇ 농가, 지자체 방역활동 생활화 지원·지도·점검
- ◇ 현장 특성에 맞는 “차단방역 매뉴얼” 제작·보급

- (지도점검) 일부 농가 백신접종·방역관리 미흡 등으로 구제역 재발 우려, 상시 자율방역 정착을 위한 지도·점검 지속

- ① 장관·차관 무작위 현장점검 및 지역담당관(108명) 월 1회 점검
- ② 농협 공동방역사업단(400개소)를 통한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
- ③ 중앙기동점검반 현장 정기점검(1회 이상/주)을 통해 소독·예찰 및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, 미실시 농가에 과태료 부과
- ④ 전국 방역실태 일제점검, 방역위반 농가에 과태료 부과 및 가축 방역약품(타 질병 백신 등) 무상공급 중단 등 제재 조치
- ⑤ 지자체의 방역관리 평가시 단체장의 방역활동 중심으로 평가

- (매뉴얼) 정부의존형 수동방역에서 농가 차단방역 생활화를 위해 “차단방역 표준매뉴얼” 개발·보급('13~'14)

- 축종별, 축산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현장 활용형 매뉴얼 개발
 - (현행) 출입통제 수준 → (개선) 특성에 따른 표준화·체계화
- 연구용역(6억; '13~'14) 및 해외사례(캐나다, 영국 등) 조사

- 축종별 21종 : 한우, 육우, 젖소, 돼지 2(일괄사육, 비육), 산란계, 육용계, 오리, 사슴, 염소 및 종축 5(소, 돼지, 닭, 오리, A센터)
- 축산시설별 6종 : 부화장, 도축장, 사료공장, 비료공장, 집유장, 계란집하장

* 해외사례 : (캐나다) 축종별 차단방역 매뉴얼, (영국) 자율형 건강농장 플랜

- 축산현장의 특성을 창의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“농가 차단방역 우수사례 경진대회” 추진
(예; 일본 우수사례집 제작·배포)
- ※ 농식품부,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농가 방역일지·수첩 표준화

나 | 선진 방역제도 조기 정착

- ◇ 효율적인 방역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허가제, 축산이력제, 축산관계 차량등록제, 질병관리등급제 등 선진제도 조기 정착
- **(허가제)** 적정사육 규모, 방역시설·교육 의무화 등 일정요건을 정한 축산업허가제 차질 없이 추진
-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, 금년부터 기업농가 시행
 - ※ 추진일정: ('13,2,23)기업농 → ('14) 전업농 → ('15) 준전업농 → ('16)50m2이상
 - ※ 허가대상(예상): 기업농(9,746호), 전업농(24,500호), 준전업농(40,046호)
- 허가제 대상농가에 대해 가축방역, 친환경 등 교육 ('13년 114천명)
 - ※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축산대학, 지역축협, 시군기술센터 등에서 실시 (축발기금)
- **(이력제)** 효과적인 방역 추진을 위해 가축출생·이동내역을 관리하는 이력제, 소에서 돼지까지 확대
- 구제역 예방접종, 역학조사 거래내역 확인 등에 이력관리시스템 활용
- '13년 중 돼지이력제 법적 근거 마련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('13.12)
 - 양돈농장, 도축장, 판매장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('12.10~'13.12)
 -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돼지이력제 근거 마련
 - * 돼지이력제 적용대상 농가 : 6천농가, 990만두 예상
- **(차량등록제)** 구제역 예방·신속 차단을 위한 축산시설 출입차량 정보관리의 “축산차량등록제” 지속 추진
- 축산시설 방문차량(사료·원유·동물약품·가축분뇨운반차량 등) 등록
 - ※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 무선인식장치 장착
- 주기적 방문차량 등록완료, 기타 차량은 홍보·계도로 등록 유도

※사료·원유 등 주기방문차량 19천대, 기타차량 18천대 등록 완료

■ (질병관리 등급제) “시범사업”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·실시 시기를 확정하여 '14년부터 단계별 추진

○ 질병등급제 : 농장의 질병발생여부, 차단방역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 (종축장 1~5등급, 일반농장 1~4등급)

○ 시범사업('13)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항목·적용시기 등 마련·시행

※시범사업 : 종축시설 95호, 일반농가 405호

※시행일정(안) : ('14) 종축장+기업농가(9,700농가예상) → ('15)전업농가 → ('16) 준전업농가 → ('17) 소규모농가(50m²이상)

■ (동물복지) 구제역 발생 등으로 증가된 동물건강·복지의 사회적 관심에 부응한 “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” 추진

○ 동물복지 수준·도입 용이성 등 고려, 연차적으로 도입

※산란계('12) - 돼지('13) - 육계('14) - 한육우, 젃소('15)

※현재 37개 산란계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('13.2월말)

○ '13년 7월부터 돼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

※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개정

○ 참고로 반려동물 등록제 전국 시행 (상반기 계도, 하반기 단속실시)

※전국 의무시행하되 도서·오지·벽지 등 제외, 228개 시군구 중 142개 시행(62%)

■ (동물약품)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차단하여 국민건강 및 소비자 신뢰향상을 위해 수의사 처방·판매제 도입

○ 수의사·수산질병관리사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“주의 동물용의약품”지정,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규정마련 ('13년 8월 시행)

※수의사 처방제 관련 근거법령 : 수의사법 시행령·시행규칙

○ 수의사 처방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“수의사 처방관리 시스템” 구축('13.1월~7월) 및 홍보·교육 실시 ☺